

## V.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

---

### 1. 보험금지급기간의 합리화

-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보가 주로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는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고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기간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.
  - 보험회사에게 합리적 조사기간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, 성급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후에 부지급사유를 발견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환수하기가 쉽지 않음.
    -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환수하더라도 그 자체가 민원의 사유가 될 소지가 큼.
  - 필요한 조사를 행하면 면책사유를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과 보험금청구자의 불만으로 인해 서둘러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.
  - 그렇다고 보험금을 서둘러 지급한다면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이 역시 보험계약의 건전성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.
  - 궁극적으로 보험금지급기간 3영업일은 보험금청구를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보험사기를 조장할 수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므로 보험금지급기간을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.
- 보험회사는 부당한 보험금청구를 심사하는 노력 이외에도 보험

사기를 경감시켜 다수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.

- 국내 보험소비자의 77.0%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험금지급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<표 12> 보험금지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의 용인도

질문	답변	
	예	아니오
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험금 지급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	618	185

주 : 803명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한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설문조사에 기반함(2009. 10월, 보험연구원).

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기간은 보험상품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함.

- 장기손해보험의 특성은 정액과 실손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재물, 상해, 건강 등을 한 증권으로 담보하는 복합형상품이라는 점에서 각 담보위험의 손해사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험사기의 학습효과가능성을 배제하여 건전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 함.

-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이며, 미국의 경우에는 45일임.

-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하는 사고유무, 면부채 유무 및 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조사하여 보험금지급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음.

<표 13> 보험금지급기간제도의 국제비교

종목	한국	일본	미국(뉴욕)
생명보험	접수후 3영업일 (조사시 10일)	5일 (조사시 120일)	승인후 5일
손해보험 (건강보험)	접수후 3영업일	30일 (조사시 180일)	접수후 45일

## 2. 장기손해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적발시스템 개선

- 보험금지급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손해보험 및 기타 보험종목의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함.
  - 그동안 인명사상과 타인의 재산피해, 이로 인한 가족의 붕괴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적발 노력을 경성사기에 중점을 두어왔음.
  - 경성사기 이외에도 보험제도의 근간인 동질위험을 훼손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연성사기 적발을 위한 시스템도 선진화가 필요함.
  - 자동차보험사기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손해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감독당국, 수사기관 및 보험업계가 공조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장기보험사기 경감을 위한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함.
    - 장기손해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기손해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이 더 양성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도 활성화되어야 함.

-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약 및 사고관련 통계에 기반한 보험사기 조사·적발을 위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발전했으며, 장기손해보험에서도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통계를 활용한 적절한 위험분류를 통해 역선택과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구축에 활용도가 높음.